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1.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12월 16일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1년 12월 16일

라. 상정일자: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2021. 12. 1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의 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조례의 합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개정 전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아래 조례의 조문을 변경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자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옥연)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후 2022.1.13. 시행일에 맞춰 별도의 내용 변경 없이 영등포구의회 소관 3개의 조례에서 상위법을 단순 인용하는 조문을 일괄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전의 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과 영의 조문별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현 행 법	개 정 법
<p><b>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b>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생략</p>	<p><b>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b>            ① ~ ② 현행과 같음</p>
<p><b>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b>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p>	<p><b>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b> ① ~ ⑦ 현행과 같음</p>
<p><b>제104조(사무의 위임 등)</b>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④ 생략</p>	<p><b>제117조(사무의 위임 등)</b> ①~④ 현행과 같음</p>
<p><b>제113조(직속기관)</b>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p>	<p><b>제126조(직속기관)</b> 현행과 같음</p>

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7조(사업소)** 현행과 같음

**제128조(출장소)** 현행과 같음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 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② 현행과 같음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 권한) 현행과 같음

제134조(하부행정기구) 현행과 같음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현 행 영	개 정 영
<p><b>제46조(제척과 회피)</b> ① 지방의 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지방의 회위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p>	<p><b>제49조(제척과 회피)</b> ① ~ ④ 현행과 같음</p>

지방의회 의원의 이익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47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제50조(주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방议회의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생략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안 제15조는 겸직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제4항을 신설하여 의장이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법 제43조제4항에 지방의회의 의장이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위임한 조문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법과 영 개정에 따라 개정 전의 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과 영의 조문별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현 행 법	개 정 법
<p><b>제35조(겸직 등 금지)</b>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p> <p>1. ~ 9. 생략</p> <p>② ~ ③ 생략</p>	<p><b>제43조(겸직 등 금지)</b>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p> <p>1. ~ 9.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u></p>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 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4조는 개정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여비의 지급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법과 영 개정에 따라 개정 전의 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과

영의 조문별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현 행 법	개 정 법
<p><b>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b></p> <p>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li> <li>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li> <li>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li> </ol> <p>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생략</p>	<p><b>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b></p> <p>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li> <li>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li> <li>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li> </ol> <p>② <u>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b>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b></p> <p>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li> <li>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li> </ol>	<p><b>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b></p> <p>② 현행과 같음</p>

<p>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p> <p>4. 제명</p> <p>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p>	
--	--

현행영	개정영
<p><b>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b>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p>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p> <p>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p>	<p><b>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b>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p>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p> <p>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p>

<p>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p> <p>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p>	<p>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p> <p>3. <u>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예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u></p> <p>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p>
--	--

○ 검토 결과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개정사항을 우리 의회 조례에 적기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2
----------	-----

발의년월일: 2021년 12월 16일

발의자: 유승용의원 외 8명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조례의 합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개정전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을 변경함.
  -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개정안 :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법 제117조와 제120조”를 “법 제131조와 제1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제50조 제1항”을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영 제46조”를 “영 제49조”로, “영 제47조”를 “영 제50조”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라서”로,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의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를 “「지방자치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88조”를 “지방자치법 제100조”로 한다.

제6조 중 “영등포구”를 “영등포구의회”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제49조</u> 및 같은 법 시행령 <u>제53조</u> ----- ----- ----- ----- -----.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등포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3. 영등포구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영등포구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u>제126조</u> 부터 <u>제129조</u> ----- ----- 법 제131조와 <u>제134조</u> ----- ----- 3. ----- 법 제163조----- 4. <u>법 제117조</u> 제2항----- ----- -----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생략)

② (생략)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포함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인의 통지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

-----  
-----.  
-----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 법 제13조  
-----  
-----.  
법 제49조제3항-----  
-----.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법 제49조제4항-----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지 않을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지에 의하여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9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② (생략)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  
-----  
-----  
-----  
-----  
-----  
-----  
-----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9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9조제4항-----  
-----  
-----  
-----  
-----  
-----  
-----  
-----

제11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52조제1항-----  
-----  
-----  
-----  
-----  
-----  
-----

제12조(징계) -----

하는 의원이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회피하지 않거나, 영 제47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이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영 제49조-----

----- 영 제50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p> <p>1. ~ 5. (생략)</p> <p>제15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 서식에 의한다.</p> <p>②·③ (생략)</p> <p><u>&lt;신 설&gt;</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라서 ----- ----- -- 의원----- ----- ----- -----.</p> <p>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15조(검직신고) ① ----- 「지방자치법」 제43조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검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u></p>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지]

영등포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	지역구	
성명	한글	구분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보수	(택일) 연월일	전화번호		
	주소			
<p><b>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b></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 (인)</p>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귀하</p>				

[별지]

영등포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	지역구	
성명	한글	구분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보수	(택일) 연월일	전화번호		
	주소			
<p><b>「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b></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 (인)</p>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귀하</p>				



